폭행 · 상해의 피해자 · 가해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 상해의 피해자 · 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 · 상해의 피해자 · 가해자 1
1. 폭행죄 · 상해죄 개관 5
1.1. 폭행죄 · 상해죄 개요 5
1.1.1. 폭행죄의 의의 5
1.1.2. 상해죄의 의의 8
1.1.3. 폭행죄 · 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10
2. 폭행죄 · 상해죄의 처벌 14
2.1. 처벌의 범위 14
2.1.1. 「형법」의 적용범위 14
2.2.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15
2.2.1. 폭행죄 ·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15
2.3.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17
2.3.1. 폭행죄 ·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17
2.4. 형의 가중 및 감경 19
2.4.1. 폭행죄 ·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 감경 19
2.5. 시효 22
2.5.1. 폭행죄 · 상해죄의 시효 22
2.6. 형의 실효 24
2.6.1. 형의 실효 24
3. 수사단계 26
3.1.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26
3.1.1. 수사절차의 진행 26
3.1.2. 고소 · 고발 27
3.1.3.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28
3.1.4. 구속 후의 절차 30
3.2. 검찰의 수사 32
3.2.1. 검찰 송치 후의 절차 32
3.2.2. 불기소처분 33
3.3.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37
3.3.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37
3.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39
3.4.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39
4. 합의 및 공탁 단계 42
4.1. 합의 42
4.1.1. 합의 42
4.2. 공탁 43
4.2.1. 공탁 43
5. 형사소송 단계 48
5.1.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48
5.1.1. 구속 및 보석제도 48
5.2. 약식명령(구약식) 52
5.2.1. 법원의 약식명령 52
5.2.2.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53
5.3. 공판 54
5.3.1. 공판절차 개요 54
5.3.2. 항소 55
5.3.3. 상고 57
5.3.4. 형사보상제도 59

5.3.5. 국선변호인제도 64
6.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67
6.1. 민사소송 등 67
6.1.1. 폭행 ·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67
6.2.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71
6.2.1. 형사상 배상명령 71
6.3.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74
6.3.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74
6.3.2. 법률구조제도 87

1. 폭행죄 · 상해죄 개관

1.1. 폭행죄 · 상해죄 개요

1.1.1. 폭행죄의 의의

폭행의 개념

폭행의 개념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 구류(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집니다.

·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폭행에 대한 판례

-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 직계존속(直系尊屬):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폭행과 상해의 상관관계

Q1.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나요?
A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2.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A2.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대한 판례

-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 18. 82도697 판결).

-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23. 85도303 판결).

·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9. 24. 80도1898 판결).

1.1.2. 상해죄의 의의

상해의 개념

상해의 개념

▪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대한 판례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대한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치사에 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2항).

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제2항 및 제265조).

1.1.3. 폭행죄 · 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절차

수사

- 수사의 개시
  -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따라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및 제240조, 「경찰수사규칙」 제18조 참조).
-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긴급체포
    - √ 사법경찰관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참조).
  - 현행범인 체포
    -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 참조).
- 구속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참조).

합의 및 공탁

- 합의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부릅니다.
- 공탁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조).

공소 제기(기소)

▪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 기소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통상 기소라고 하며, 공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제1항 참조).

▹ 기소중지

√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중지하는 결정이고,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하는 결정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 참조).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9조 참조).

▪ 불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결정이라 하며,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참조).

형사조정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토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조제1항 참조).

형사소송

▪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제1항 참조).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50조 참조).

▪ 판결

▹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통상 피고인은 따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받습니다.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 참조)

유죄판결의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형의 면제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62조 및 「형사소송법」 제321조 참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73조 참조).

배상명령청구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참조).

민사절차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폭행죄 · 상해죄의 처벌

2.1. 처벌의 범위

2.1.1.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1항).

>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2항).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 ※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4조).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6조).

> ※ 법령용어해설
>
> 소추(訴追):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2.2.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2.2.1. 폭행죄 ·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정당행위

▪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긴급피난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2항).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및 제21조제2항).

※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 긴급피난에 대한 판례

-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 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자구행위(自救行爲)

▪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3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조제2항).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

·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87 판결).

2.3.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2.3.1. 폭행죄 ·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소년법」에 따른 처분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의 해결-법원을 통한 해결-형사책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및 제2조 참조).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3항).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심신장애인의 불처벌 등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하 "심신장애인"라 함)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제1항).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형법」 제10조제3항).

> ※ 심신장애인 관련 판례
>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판결).

심신미약자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하 "심신미약자"라 함)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제2항).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제3항).

>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92도1425 판결).

농아자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형법」 제11조).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2조).

2.4. 형의 가중 및 감경

2.4.1. 폭행죄 ·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 감경

양형(量刑)의 조건

양형 판단 시 고려 요소

- 형을 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형의 가중

누범(累犯)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제1항).
-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제2항).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6조).

>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
> ·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조제2항).

> ※ 법령용어해설
>
> · 교사(敎唆):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방조(幇助):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경합범은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형의 감경

자수, 자복(自服)

▪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 자수에 대한 판례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법령용어해설

· 자복(自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정상참작감경

▪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형법」 제54조).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형법」 제55조제1항).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5조제2항).

형의 가중경감 순서

가중·감경할 사유의 경합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형법」 제56조).

1.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 제34조제2항)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2.5. 시효

2.5.1. 폭행죄 · 상해죄의 시효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사형은 제외함)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1항).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2항).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의 진행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4항).

2.6. 형의 실효

2.6.1. 형의 실효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 형의 실효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

형의 당연 실효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전과기록의 말소

Q1.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① 형이 실효되거나 ②집행유예 기간 또는 ③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④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Q2.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A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사례 >

3. 수사단계

3.1.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3.1.1. 수사절차의 진행

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

▪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인지(「경찰수사규칙」 제18조) 등이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의 체포·구속

피의자의 체포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피의자의 구속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의 검찰송치

사건의 검찰송치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공소 제기

공소제기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 참조).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고소 · 고발

고소

고소의 개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소권자

▪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 고소(고발)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쌍방고소의 개념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 합니다.

고발

고발의 개념

▪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방법

▪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고발(고소)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무고죄

▪ 무고죄의 개념

▹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 무고죄의 처벌 등

▹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3.1.3.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불구속수사의 원칙

불구속수사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사유

구속 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구속방법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및 제4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85조제1항).

▪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즉시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 ※ 법령용어 해설
>
>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3.1.4. 구속 후의 절차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구속적부심사의 개념

-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법원의 결정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0항).

재구속의 제한

▪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1항).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2항).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석방 결정 시 고려사항
- 법원은 석방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및 제214조의2제7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의자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피의자 신문(訊問)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

Q. 저는 폭행·상해죄의 가해자로 얼마 전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찰관은 신문하는 동안 저에게 그러한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2조).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

※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녹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 피의자 신문 시에는 참고인과 대질(對質)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3.2. 검찰의 수사

3.2.1. 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38조 및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3항).

▪ 공소의 취소

▹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공소 제기 처분에 대한 고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참조).

3.2.2.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1항).

▪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3항).

▪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4항).

▪ 검사는 피의자가 위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제5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 전단).

※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 후단).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4호).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각하

▪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5호).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함)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

▪ 검사가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참조).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

▪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

)를 교부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의 개념

▪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前置)

▪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제1항).
- 광역공소청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공소청법」 제57조제2항).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1조 본문).

▪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1조 단서 참조).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대응

Q.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공소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A.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제1항).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및 제4항). 이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 다만,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제3항제1호).

※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정된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 및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의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3.3.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3.3.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8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1항).

▪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3항).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피해자 등에게 정보제공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위 1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위 2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위 2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 위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3항).

▪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

-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 사법경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

-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3.4.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참조).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소년사건에서의 소년에 대한 조사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1항).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2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3항).
—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제4항).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경찰서장은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7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의 해결-법원을 통한 해결-형사 책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등의 고지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訊問)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참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 선임권

▪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참조).

※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 참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항).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합의 및 공탁 단계

4.1. 합의

4.1.1. 합의

합의

합의의 의의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부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에는 검사나 판사가 형량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4.2. 공탁

4.2.1. 공탁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많아 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이행지 법원에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합니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제9조의2,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 참조).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통(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함)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통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참조).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법원은 폭행·상해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1항 본문).

▪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1항 단서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2항).

-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해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및 제33조).

-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참조).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규칙」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공탁의 효과

공탁의 효과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제한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제9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민법」 제489조).

-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 피해자가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한 경우
-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사유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4조).

- 공탁물 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공탁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 피의자(피고인)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참조).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규칙」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5. 형사소송 단계

5.1.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5.1.1. 구속 및 보석제도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구별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제3항·제4항).

▹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의 통지 등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

※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구속 기간

▹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

구속의 취소 등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제2항).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구금일수의 통산

▪ 피고인으로서 판결선고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은 징역기간에 포함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참조).

▪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피고인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산입

Q. 저는 폭행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을 당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날부터 앞으로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인가요?

A. 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후 징역 등 강제로 구금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징역 등의 구금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의 징역기간에 판결선고 전 구금되었던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 징역기간이 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의 개념

▪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보석의 청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피고인
-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

보석 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보석의 조건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보석의 집행

▪ 다음에 해당하는 보석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1항).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제5항).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본문).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3항).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4항).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

▪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

보석의 효력 상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2제1항).

>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구별
>
>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이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구별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5.2. 약식명령(구약식)

5.2.1. 법원의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방식 및 고지

약식명령의 방식

▪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고지

▪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의 효력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5.2.2.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의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방법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 피고인은 위의 정식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2항).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형종 상향의 금지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 금지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5.3. 공판

5.3.1. 공판절차 개요

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본문).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단서).

공판기일의 지정

▪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심리 및 판결

심리

▪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판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 다만,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 참조).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상소의 이유

▪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및 제383조).

불이익변경 금지

▪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96조제2항).

5.3.2. 항소

※ 법령용어해설

-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판결(判決): 피고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두변론(口頭辯論)에 따른 심리를 거쳐 종국 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따라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 결정(決定):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항소

항소관할법원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이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및 제362조).

> ※ 법령용어해설
>
> - 즉시항고(卽時抗告):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항고제기 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제기 기간 내 또는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 · 법률이 이러한 즉시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심재판에 불복하는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전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44조제1항).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2항·제3항).

※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법원의 심판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1항·제2항).

▪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

불이익변경의 금지

▪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5.3.3. 상고

상고

상고관할법원

▪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 ※ 비약적 상고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2조).
>
> ·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 -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상고이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및 제375조).

※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6조).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전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후단 및 제344조제1항).

▹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3항·제4항).

※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1항).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2항 및 제383조).

상고법원의 심판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합니다. 다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및 제38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1조).

▪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상고법원은 파기의 이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93조부터 제396조까지).

▹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6조제2항 및 제368조).

5.3.4.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의 의의

▪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항 참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 위 3.의 보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따른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소송법」 상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 청구의 취소

-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청구의 중단·승계

-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법원은 보상청구에 대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 청구 각하의 결정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4항).

√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 청구기각의 결정 :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보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보상결정을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05조),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복 신청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 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형사보상금 지급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형사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무죄재판서 게재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6조제1항).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방법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대리인에 의한 청구나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청구에 대한 조치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5.3.5.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

▪ “국선변호인제도”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나이,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 이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지만,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사건유형별 절차안내-형사소송 절차안내).

변호인 선정의 취소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 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

6.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6.1. 민사소송 등

6.1.1. 폭행 ·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민사소송 등 개요

민사소송 등 개요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의 의의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절차

▪ 민사조정의 신청

▹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참조).

▹ 민사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 민사조정 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

▪ 민사조정의 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민사조정의 효력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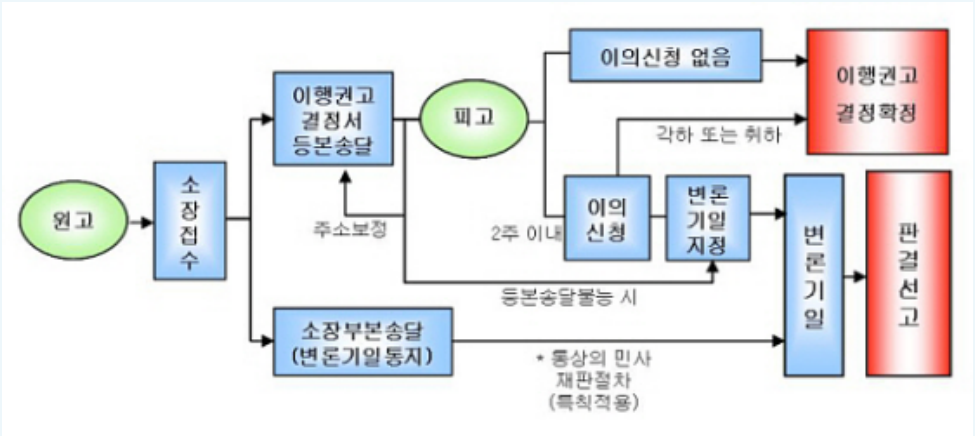
▪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의 범위

▪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

※ 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변론

▹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제10조).

▪ 판결의 선고

▹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

▪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소장의 제출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2항 및 제3항).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 변론준비 절차

▹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참조).

▹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참조).

▪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참조).

▪ 변론기일

▹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참조).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 비용

▪ 소송비용 패소자(敗訴者) 부담 원칙

▹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

▹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勝訴者)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함)는 소송목적의 값(주장하는 값)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며,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은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6.2.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6.2.1. 형사상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의 개념

▪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사건유형별 절차안내-형사소송 절차안내).

▪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사건유형별 절차안내-형사소송 절차안내).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조)

▪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배상명령신청 방법

▪ 서면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 구술신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법원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방법

▪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 법령용어 해설

상소(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며,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재판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닙니다. 또한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닙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법령용어 해설

· 면소(免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의 면제를 선고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완성, 확정 판결, 사면,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공소기각(公訴棄却): 사건에 대해 관할권 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친고죄(親告罪)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경우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

6.3.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6.3.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란?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념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신고/지원-치안정보/지원-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참조).

범죄피해자구조의 적용범위

구조금 지급대상 범죄

▪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인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다만,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

구조피해자의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

▪ 위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등급	신체상의 장해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경우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한쪽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경우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 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4.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경우 7.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9. 흉부·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6. 한 손의 집게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제14급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합니다.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 등급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해로 봅니다.

※ 신체의 장해가 중복될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위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별표 2).

√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2).

▹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의 종류 및 금액

구조금의 구분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유족구조금

▪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②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모

③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손자·손녀

④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부모

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⑥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자녀

⑦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부모

⑧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자·손녀

⑨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조부모

⑩ 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선순위가 되며, 친생부모가 후순위가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유족구조금의 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

관계		산정 기준 개월 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48개월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25세 이상인 자녀		28개월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부모	36개월
	√ 25세 미만인 손자·손녀	
	√ 60세 이상인 조부모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 25세 이상인 손자·손녀	24개월
	√ 60세 미만인 조부모	
	√ 19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또는 부모		28개월
6.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24개월

※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위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계	산정 기준 개월 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	48개월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36개월

▹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관계	산정 기준 개월 수
가.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나.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위 3.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단서).

※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및 순위는 유족구조금의 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 장해구조금의 금액

▹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장해등급별 산정 기준 개월 수
1급: 48개월 2급: 44개월 3급: 38개월 4급: 34개월 5급: 28개월 6급: 24개월 7급: 20개월 8급: 14개월 9급: 10개월 10급: 5개월 11급 또는 12급: 4개월 13급 또는 14급: 3개월

※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따라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긴급구조금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4항).

▪ 반대로,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구조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2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구조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 전단).

▪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 포함)의 구조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2항).

결정을 위한 조사 등

▪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1항).

▪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지급 결정 및 지급

▪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6조).

▪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제한

친족관계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범죄행위 당시에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

-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친족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5항).

귀책사유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
- 해당 범죄행위에 관련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 어느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사회통념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구조금 지급

▪ 구조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

▹ 국가로부터 이미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 “청구권 대위”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구조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 순서

▪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전단).

※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후단).

범죄피해 구조금의 환수 등

구조금의 환수

▪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구조금 지급 청구권의 시효

▪ 구조금 지급 청구권은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6.3.2.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제7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참조)

< 민사사건 처리절차 >



< 형사사건 처리절차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의 대상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소송구조-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참조).

법률구조의 신청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또는 형사법률구조신청서(「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제42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그 밖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